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시설 해당여부

Q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폐수는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있고, 금번 공장 증설 과정에서 작업장내 농축탱크에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옥상에 진공펌프를 설치하였는데 옥상에 있는 진공펌프가동시 진공펌프의 내부공차를 없애고 진공을 유지하고 또한 펌프의 냉각용으로 진공펌프 내부에 물을 유입시킨후 냉각후 바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수는 단순히 진공펌프 내부에만 들어갔다 그대로 배출되고 오염물질은 거의없고 유입된 그대로 지하수 상태로 배출되는데 이배출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밖으로 배출시켜도 수질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등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로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배출허용기준이내인 경우에는 직접 방류할 수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적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인이 동일사업장의 관리를 겸임할 수 있는지?

Q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의 대기배출업소인 사업장이 1공장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2공장을 대구 서구 중리동에 허가받아 대기배출시설을 허가 받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때 환경관리인이 기존공장과 신규공장인 2공장까지 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요.(동일사업장이며, 대기배출신고필증은 따로 발급 되었습니다.)

A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면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으로 산정한 양)이 80톤 미만이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질 법정교육 이수관련 질의

Q B회사는 A회사와 올해 합병하여 A회사로 상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1종 사업장으로 수질환경기술인을 2명 선임하여 매3년 실시하는 수질 법정교육을 2인 모두 2005년 이수하였습니다. 합병후 A회사의 수질환경기술인으로 B회사의 수질환경기술인 2명이 유입되었을 경우 사업장명 변경에 따른 교육을 올해 이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5년 교육 이수가 인정되어 2008년 법정교육을 이수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폐수처리시설은 모두 B사업장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었고 A회사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없고 인접한 C회사에서 공동처리함.

A 이미 교육을 이수한 B회사의 환경기술인이



합병한 A회사의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되었다면 교육을 기 이수한 B회사의 환경기술인은 A 회사의 환경기술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시점

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 상황 및 처리실적을 기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배출하지않은 상태에서는 발생량을 확실히 알수가 없는데 처리를 즉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측량을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출한 후 인계서를 받아서 정확한 양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폐기물관리대장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건설폐기물을 발생 및 처리시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발생량 및 발생량 누계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시 발행하는 인계서를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면 됩니다.

공사장 생활소음 재측정 가능여부

Q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브레이커장비를 동원하여 바닥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을30분 가량 실시하였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 심하여제가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5분간 측정하였더니 82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이 측정값을 근거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행정처분이 불가능 하다면 공무원 입회하에 콘크리트 깨는 작업을 재현하여 측정값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A 민원인이 측정한 소음 측정자료를 근거로 소음·진동 규제조치는 불가능하오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경우 관

할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담당공무원이 공사장소음을 측정하여 규제기준 초과시 동 법제26조 규정에 의거 방음시설 설치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미 공정이 끝난 작업을 재현하여 소음을 측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악취 배출시설 여부

Q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각 업종마다 악취배출시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중 악취가 나지 않으면 ~ 예를 들어 시설 종류가 24.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업이고 혼합시설이 3톤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이상일때 이시설이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원료에 단순 정제수로 희석하여 제품을 내보내다던가 악취가 나지 않는 고상 물질은 단순히 혼합만 한다면 악취가 나지 않을텐데 이러한 공정을 가지는 혼합시설도 악취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악취배출시설은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업종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제2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규모 기준 이상의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어느 한 부분공정이 규모이상의 공정에 해당될 경우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 최종제품 생산 단계까지를 악취배출시설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용적 3m³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혼합공정을 대상으로 악취배출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 최종제품 생산단계까지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배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악취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